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영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”를 “영업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영업장의 면적(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해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제36조의2제2호 중 “20일”을 “10일”로 한다.

제44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제2조, 제3조 및 제5조를”을 “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3호 및 제5호”를 “제3호, 제3호의2, 제5호 및 제5호의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”를 “제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소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추가로 개설한”을 각각 “함께 운영하는”으로 한다.

제54조제1항제3호 중 “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”를 “다음 해 2월 말일까지”로 한다.

별표 6 비고 제6호 중 “용량검사를”을 “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을”로, “기준량”을 “수거량”으로, “정한 용량검사에 ”을 “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제7호가목1)부터 5)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에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운반 및 보관시설

- 5) 축산물운반업 영업자가 자신이 운반하는 축산물 등을 일시적(5일 이내)으로 보관하려는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·냉장시설을 갖추 수 있으며,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해야 한다.

별표 10 제8호가목1)가)부터 다)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) 영업장(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)

별표 10 제8호가목2) 중 “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·식용란수집판매업”을 “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·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·식용란수집판매업”으로 하고, 같은 목 3)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) 화장실(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 이용하는 식육판매업의 경

우는 제외한다)을 설치해야 하며,

별표 10 제8호가목4) 중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1)마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목 4)다)에 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)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.

(1)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위생적이어야 하며,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·눈·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일 것

(2)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 것

(3) 제품의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소비기한, 중량 등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

(3)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5호나목3)의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인 경우 그 유통전문판매업에 사용되는 창고 등 시설의 일부 구역(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)

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4의3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·폐기 등 조치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라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마.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	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		

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6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·폐기 등 조치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7호다목1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2)를 3)으로 하고, 같은 목에 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) 축산물운반업(차량 관련 위반)

2) 축산물운반업(차량 외 시설 관련 위반)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마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·폐기 등 조치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영업정지 1 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1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·폐기 등 조치를 거부·방해·기피한 경우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	영업정지 3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

별표 12 제3호의2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자. 식용란을 선별·포장 처리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제42호 서식의 식용란 선별·포장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. 이 경우 식용란 선별·포장 처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.

별표 13 제2호마목 중 “적재”를 각각 “적재·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 중 “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·부위명칭·등급·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”를 “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목에 1)부터 5)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더목1) 중 “다른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하려는”을 “판매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더목5)를 삭제하며, 같은 목에 1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) 판매용 포장육은 적법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.
- 2)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·부위명칭·등급·소비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.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,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,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3)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, 쥐·바퀴 등 해충이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.

다.

4)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,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.

점검일시	점검자	점검결과		비고
		내부 청결 상태 등	정상가동 여부 등	

5)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영업신고번호, 일련관리번호(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.), 고장 시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.

13)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식용란은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제조·가공업의 열처리 공정이 포함된 가공 원료로만 공급해야 한다.

별표 13의2 표 제2호 위반사항란 중 “제공”을 “입력”으로 하며,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중 “2일 이상”을 “5일 초과”로, “제공”을 “입력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중 “제공”을 “입력”으로 하며, 같은호 다목을 삭제한다.

별표 16 해당법조문란 중 “제2호러목”을 “제2호머목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품정보	품목의 유형	주원료의 유형(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	제품명	등록요청 품목제조보고번호(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소비기한	제조일부터	일(월, 년)	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(뒤쪽에 작성)
용도·용법			
보관방법 및 포장재질			
포장단위			
성상			
품목의 특성			
· 분쇄한 포장육 해당 여부	[]에	[]아니오	
· 살균·멸균 제품 해당 여부	[]비살균 []살균 []멸균		
· 고열량·저열량 제품 해당 여부	[]에	[]아니오	
· 영양성분 표시 대상 제품 해당 여부	[]에	[]아니오	
·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[]에	[]아니오	
·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[]에	[]아니오	
·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			
- 영양성분 조절 제품 [], 경도 조절 제품 [], 점도 조절 제품 [], 해당 없음 []			

별지 제4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식육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·운용 등) ①·② (생략)	제7조(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·운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9조제3항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
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<u>영업자</u>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영업자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업자</u>
가.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자</u>	<삭 제>
나. 총리령 제1436호 <u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호에</u> 해당하는 <u>영업자</u>	<삭 제>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	제36조(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) ① ----- -----

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영업장의 면적

5. ~ 9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36조의2(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1. (생략)

2.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할 것

제44조(건강진단 대상자 등) ①·

②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영업장의 면적(1개월 이내의 일시적 행사 운영을 위해 신고관청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5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10일 -----

제44조(건강진단 대상자 등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2조,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.

제50조(교육의 생략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~ 7. (생략)
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 제2조부터 제5조
까지를 -----.

제50조(교육의 생략 등) ① 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

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<u>추가로</u> 개설한 경우: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(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	----- ----- ----- ----- 함께 운 영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을 <u>추가로</u> 개설한 경우: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생략(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	2. ----- ----- ----- 함께 운영하 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	----- ----- -----
3.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<u>추가로</u> 개설한 경우: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(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9조제10항 및 이 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)	3. ----- ----- ----- ----- 함께 운영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4. (생 략) ③·④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4조(생산실적 등의 보고)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·집유업·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	제54조(생산실적 등의 보고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(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. 1.·2. (생 략) 3.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: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<u>다음 해 2월 말일까지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